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일

고 흥 군 의 회



##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7조)
- 바. 지도·감독, 사후관리 및 업무위탁 등(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사. 전담인력 지원(안 제11조)

아. 중복지원 제한(안 제12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3. 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7. 3. ~ 2024. 7. 9.(7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수요 파악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범위,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인력 지원)**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및 그 밖에 도움 제공 등 돌봄 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소관부서	비고
1	광양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주민복지과	
2	나주시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3	목포시	목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4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5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가정행복과	

※ 2023년 46개 자치단체 조례 제정  
2024년 11개 자치단체 조례 제정

[붙임 2]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